

- '98년 2기분 자가용차량 및 세액 : 1,658,524대 2,802억 3백만원
- 이러한 세수결손예상액에 대하여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761억 5백만원을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키고 하고 이미 지난 1월 29일부로 우리 시에 해당금액이 배정 통지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키로 정책협의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배정된 교부금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자금이 지급되고 지방주행세가 예정대로 신설된다면 본 자동차세를 인하여 따른 세수감소로 시 재정정책 운영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이 현행대로 존치될 경우에는 자동차세 인하를 전제로 지난해 9월 대폭 인상된 교통세[휘발유 1ℓ 445원→591원('98.5)→691원('98.9)]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한편, 지방세제에 주행세를 도입, 자동차 보유관리수단인 자동차세와 상호보완을 통해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련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건

1. 개정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6일 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중 제9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및 추정규정과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한 무역업자의 중고수출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면제규정 등을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운영상의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

- 1)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신설)에 대하여
 - 안 제26조의5(신설)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과 추징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최초 7년은 전액, 이후 3년은 100분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 이는 IMF와 더불어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법인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경우에 국세(법인세·소득세), 시세(취득세·등록세), 자치구세(재산세·종합토지세)중 일부세목을 감면토록 하고,
 - 동조제4항에서는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최초 5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를 감면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부(행정자치부)에서 1998년 12월 30일자로 통보된 준칙(행정자치부 세제13400-334)에 의거 최초 7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후 3년은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보다 많은 투자촉진을 위한 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감면규정의 신설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부가가치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고용창출 중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2)중고수출차량의 취득세 감면(신설)에 대하여
- 안 제26조의6(신설)은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서,
 - 현행 조례 제13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형평이 맞도록 취득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이렇게 대외무역업자에게 취득세 면제혜택을 줄 경우 중고차량 등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장치가 요구됨.
- 3) 기타 안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제3항,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 등에서 적시된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중 “4,500원”을 “4,800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후단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를 “제2조 및 제4조”로 하고, “호주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중고수출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건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92.1.15)은